

부속서 II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베트남

주해

1. 개별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 대하여 표시된 글자와 괄호 안의 숫자는 서비스분야별분류목록(1991년 7월 10일자 GATT 문서 MTN.GNS/W/120)에 대한 언급이다.
2. 알파벳과 숫자로 된 구분은 구체적 약속의 내용을 나타낼 뿐이며 그 구체적 약속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개별 CPC 코드에 대한 “\*\*”의 사용은 그 코드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그 코드에 따른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전체 범위까지 확장되지 않음을 표시한다. “CPC 코드”는 잠정 중앙상품분류(통계문서시리즈 M No.77, 국제 경제사회국, 유엔 통계사무소, 뉴욕, 1991)에서 사용되는 코드를 말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12조(전환)에 따라, 베트남은 전환 절차에 따라 제8.11조(현지주재),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및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하여 약속을 하는 경우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12조(전환) 제3항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전환 절차에 따라 베트남이 이 양허표에 “최혜국 대

우”로 표시된 사항 외의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 관하여 최혜국 대우 약속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6. 베트남은 신규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 양허표에 적시되지 않은 모든 분야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2조(적용범위) 제3항마호4목부터 6목까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특수 항공 서비스, 지상 취급 서비스 및 공항 운영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베트남은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영주권자를 자연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제8.6조(최혜국 대우) 1호가목은 각각 “미래자유화”와 “최혜국 대우”로 표시된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만 적용된다.
10. 제8.1조(정의) 러호4목에 언급된 서비스의 공급 형태는 제8.6조(최혜국 대우),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제8.10조(투명성 목록)에 따른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11. 약속 안함\*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하지 않음을 말한다.

**부속서 II**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베트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I. 수평적 양허</b>			
이 양허에 포함된 모든 분야	<p>(3) 이 양허표의 각 구체적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 사업협력계약<sup>1</sup>, 합작투자기업, 100 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의 형태로 상업적 주재를 설립할 수 있음.</p> <p>외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대표 사무소가 베트남에 설립되는 것은 허용되나, 이들은 어떠한 직접적인 영리창출활동<sup>2</sup>에 종사하지 않음.</p> <p>이 양허표의 각 구체적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지점 설립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p>기존의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영업이나 서비스 공급을 수립하거나 허가하는 각각의</p>	<p>(3) 보조금 수령 자격은 베트남 서비스 공급자, 즉 베트남 영역 내 또는 그 일부에 설립된 법인으로 제한될 수 있음.</p> <p>주식화 과정을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한 일회성 보조금 지급은 이 약속의 위반이 아님.</p> <p>연구 및 개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보건, 교육 및 시청각 분야 보조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소수 민족의 복지 및 고용 증진을 위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sup>1</sup> 사업협력계약은 두 명 이상의 당사자에 의하여 서명된 문서이고(최소한 한 당사자는 베트남의 법적 실체이고 한 당사자는 외국의 법적 실체여야 함) 법적 실체를 설립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투자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책임 및 양 당사자 간 사업 결과 공유를 규정한 문서이다.

<sup>2</sup> 대표사무소는 무역 및 관광기회를 추구하고 증진하고자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의 하위조직이지만 어떠한 직접적인 영리창출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p>면허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승인에 규정된 소유권, 영업 및 법적 형태와 활동 범위의 조건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는 조건보다 더 제한적이 되지 않음.</p> <p>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그 외국인투자기업은 베트남 정부에 의하여 토지 이용료가 수반되는 토지를 분배하는 것, 전체 임차 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일시 지급하거나 매년 토지 임차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임차하는 것이 허용됨. 토지 이용 기간은 투자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결정되고 투자 면허에 기술됨. 기간이 만료된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전히 토지 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베트남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하여 허용된 연장 기간에 따라 연장을 고려할 것임.</p> <p>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로 출자하는 것이 허용됨. 합자 상업은행의 주식 매수 형태의 출자 및 이 양허표에서 약속되지 않은 분야의 경우, 베트남 법에 달리 규정되거나 권한 있는 베트남 당국에</p>		
--	--	--

	<p>의하여 허가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가 각 기업에      보유하는 총 지분은 그 기업의      설립 자본의 3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p>이 양허표에 약속된 그 밖의      분야 및 하위분야의 경우,      베트남 기업 인수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취득 수준은,      적용 가능한 경우, 과도기      형태의 제한을 포함하여 그에      규정된 외국 자본 참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에 상응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II. 분야별 구체적 약속</b>			
<b>1. 사업 서비스</b>			
<b>A. 전문적 서비스</b>			
(a) 법률 서비스 (CPC 861, 다음은 제외한다 - 베트남 법원에서 고객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소송 절차에 참가 - 베트남 법에 대한 법률 문서 작성 및 공증서비스)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 변호사 조직<sup>3</sup>은 베트남에 다음 형태로의 상업적 주재의 설립이 허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변호사 조직의 지점</li> <li>• 외국 변호사 조직의 자회사</li> <li>• 외국 법무회사(로펌)<sup>4</sup></li> <li>• 외국 변호사 조직과 베트남 법률 파트너십 간의 파트너십</li> </ul> <p>자문 변호사가 베트남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종의 베트남 법률 전문가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 변호사 조직의 상업적 주재는 베트남법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허용됨.</p> <p>외국 변호사 조직은 지점의 장을 포함하여 최소 2인의 외국</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sup>3</sup> “외국 변호사 조직”은 하나 이상의 외국 변호사 또는 법무회사에 의하여 어떠한 상업적 법인 형태로든 외국에서 설립된 개업 변호사의 조직이다(회사, 기업, 법인을 포함한다).

<sup>4</sup> “외국 법무회사”는 베트남에서 법률 사무를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외국 변호사 조직에 의하여 베트남에 설립된 조직이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변호사를 보유할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야 하며, 외국 법무회사(로펌)의 책임자는 연속 12 개월 내 최소 183 일동안 베트남에 주재하고 법률 사무를 해야 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b)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CPC 862)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c) 세무 서비스 (CPC 863)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건축 서비스 (CPC 86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기업은 다른 당사자의 법인이어야 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기업은 다른 당사자의 법인이어야 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도시-농촌 개발 계획 및 부문별 개발 계획을 위한 지형학, 지질공학, 수문지질학 및 환경 조사와 기술 조사 관련 서비스 공급은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조건으로 함 <sup>5</sup> .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sup>5</sup>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GATS 제 14 조 및 제 14 조의 2에 따라 정당화되는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이유로 제한이나 규제의 유지 또는 채택을 허용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3) 외국 기업은 다른 당사자의 법인이어야 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3) 도시-농촌 개발 계획 및 부문별 개발 계획을 위한 지형학, 지질공학, 수문지질학 및 환경 조사와 기술 조사 관련 서비스 공급은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조건으로 함<sup>6</sup>.</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g)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CPC 8674)  (유적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의 개발, 공사, 프로젝트 감독, 정비, 개축 및 복원 부수 서비스는 제외한다)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 기업은 다른 당사자의 법인이어야 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담당 외국인 건축사는 베트남이 부여하거나 인정한 전문직 개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p> <p>일부 분야에서, 국가 안보 및 사회 안정을 위한 베트남의 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 서비스 공급자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sup>7</sup>.</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sup>6</sup>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GATS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정당화 될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이유로 제한이나 규제의 유지 또는 채택을 허용한다.

<sup>7</sup>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GATS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정당화 될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이유로 제한이나 규제의 유지 또는 채택을 허용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약속 안함.		
(i) 수의료 서비스 (CPC 932) <sup>8</su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사적 개업활동의 수행을 위해서만 그리고 수의료 당국의 허가에 따라 자연인의 접근이 허용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sup>8</sup> 수의료용 미생물 변종 보관은 제외한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CPC 841–845, 849)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 지점 설립이 허용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지점의 장은 베트남 거주자여야 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b>C. 연구개발 서비스</b>			
(a) 자연과학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1)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b>D. 부동산 서비스</b>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 주거용 재산 관리 서비스 <sup>9</sup> (CPC 82201)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sup>9</sup> 주거용 재산 서비스 사업에 관여된 조직이나인이 주거용 재산(단독 주택, 연립주택, 다가구 아파트 건물 또는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다용도 건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및/또는 이용자로부터 계약을 통하여 주거용 재산을 정비, 운영 및 이용(판매, 임대, 리스 또는 감정평가를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포함된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 비주거용 재산 관리 서비스 <sup>10</sup> (CPC 8220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b>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1)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2)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3)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2)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3)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up>10</sup> 비주거용 재산 서비스 사업에 관여된 조직이나 인이 비주거용 재산(단독 주택, 연립주택, 다가구 아파트 건물 또는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다용도 건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및 /또는 이용자로부터 계약을 통하여 비주거용 재산을 정비, 운영 및 이용(판매, 임대, 리스 또는 감정평가를 포함한다)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포함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반한 농업, 산림 및 유사한 재산에 관한 재산 관리 서비스는 제외된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그 밖의 운송장비 관련  철도 운송장비 관련 (CPC 83105**)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외국인 출자가 7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투자 설립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열에 기재된 사항과 같음.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CPC 83109)  (산업 기계 및 장비로 한정한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F. 그 밖의 사업 서비스</b>			
(a) 광고 서비스 (CPC 871, 담배 광고는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포도주 및 증류주 광고는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제외한다)	<p>(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광고 서비스를 하도록 법적으로 허가 받은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투자 또는 사업협력계약을 설립하도록 허용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규정을 따름.
(b) 시장조사 서비스 (CPC 864, 86402 는 제외한다)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인 출자가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가 허용됨. 100 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용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c) 경영 컨설팅 서비스(CPC 865)	<p>(1)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p> <p>(2)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p> <p>(3) 제한 없음.</p>	<p>(1)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p> <p>(2)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p> <p>(3) 지점의 장은 베트남 거주자여야</p>	-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지점 설립이 허용됨.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함.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d)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  - CPC 866, CPC 86602 는 제외됨 - 사업자간 상업적 분쟁에 대한 중재 및 조정 서비스(CPC 86602**)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 지점 설립이 허용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지점의 장은 베트남 거주자여야 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식료품에 대한 포장 서비스(CPC 876**)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인 출자가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가 허용되며 공업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의 포장 서비스에만 한정되는 것 외에는 약속 안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열에 기재된 사항과 같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약속 안함.		
가정용 청소기에 대한 포장 서비스(CPC 876**)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인 출자가 49 페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가 허용되며 공업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의 포장 서비스에만 한정되는 것 외에는 약속 안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열에 기재된 사항과 같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하드웨어에 대한 포장 서비스 (CPC 876**)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인 출자가 49 페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가 허용되며 공업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의 포장 서비스에만 한정되는 것 외에는 약속 안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열에 기재된 사항과 같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1)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PC 8676, 운송차량의 적합성 검사 및 운송 차량 인증은 제외한다)	<p>(2) 제한 없음.</p> <p>(3) 서비스가 정부의 권한 행사로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전에 민간 분야 경쟁을 허용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민간 공급자의 접근을 베트남이 허용하는 경우, 민간분야 경쟁에 대한 그러한 접근이 허용되는 날부터 3년 후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 없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작투자가 허용됨. 민간 분야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러한 접근이 허용된 날부터 5년 후 제한 없음.</p> <p>특정 지리적 지역에 대한 접근은 국가 안보를 사유로 제한될 수 있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f) 농업, 수렵 및 임업 부수 서비스 (CPC 881) <sup>11</su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sup>11</sup> 산림개발, 희귀 야생동물 수렵 및 포획, 항공촬영, 항공파종 및 항공약제 분무 및 살포, 농업에서의 미생물 식물, 동물의 유전자원을 포함한 천연림 조사, 평가 및 개발 관련 서비스는 제외된다. 모호성 회피를 위하여, 축산업 및 종축개선은 이 약속에 포함된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3) 합작투자 또는 사업협력계약의 형태로만 한정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51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3) 특정 지리적 지역에 대한 접근은 제한될 수 있음.<sup>12</sup></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h) 광업 부수 서비스(CPC 883)			
	<p>1. 이 양허표에 명시된 약속은 다음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되지 않음: 장비, 재료 및 화학물 공급, 공급기반 서비스, 연안 또는 해양 지원선박, 숙박 및 케이터링, 헬리콥터 서비스.</p> <p>2. 이 양허표에 명시된 약속은 GATS에 따른 베트남의 권리 및 의무와 완전히 합치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영역 또는 관할권 내에서 수행되는 석유 및 가스 관련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 규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베트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p>		
	<p>(1) 상업적 주재가 없는 회사는 베트남의 적용 가능한 법에 기술된 조건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등록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인 출자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가 허용됨. 100 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용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p>	<p>(1)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열에 기재된 사항과 같음.</p> <p>(2) 제한 없음.</p> <p>(3)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열에 기재된 사항과 같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p>	

<sup>12</sup>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는 GATS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이유로 한 제한이나 규제의 유지 또는 채택을 허용한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CPC 884 및 88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출자가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만 허용됨. 100 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용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m)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sup>13</sup> (CPC 86751, 86752 및 86753로 한정한다)	(1) 상업적 주재가 없는 회사는 베트남의 적용 가능한 법에 기술된 조건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등록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출자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가 허용됨. 100 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용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1)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열에 기재된 사항과 같음.  (2) 제한 없음.  (3)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열에 기재된 사항과 같음.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sup>13</sup> 탐사, 조사, 탐험 및 개발 관련 서비스 공급은 베트남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을 따른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n) 장비의 정비 및 수리(해상 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장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CPC 63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출자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가 허용됨. 100 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용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열에 기재된 사항과 같음.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b>			
B. 쿠리어 서비스(CPC 7512**)  * 특급 배달 서비스 <sup>14</sup> , 즉, 국내 또는 해외 목적지를 불문하고 다음 항목의 수집, 분류, 운송 및 배달로 구성된 서비스:	(1) 제한 없음. <sup>17</sup>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 (2)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 (3) 100 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이	(1)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 (2)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 (3)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최혜국	그 밖의 모든 당사자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경쟁활동에 있어서 베트남 우체국 또는 그 자회사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가 부여됨.

<sup>14</sup> 특급 배달 서비스는 빠른 속도와 신뢰성에 추가하여 발신지로부터 수집,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 배송 추적, 배송 중 목적지 및 주소 변경 가능, 수취 확인과 같은 부가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a) 다음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물리적 매체에 담긴 서신 송달<sup>15</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브리드 메일 서비스</li> <li>- 다이렉트 메일</li> </ul> <p>가격이 다음보다 낮은 서신 송달 항목의 취급은 제외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배송의 경우 최하위 중량 등급에 속하는 표준 국내 우편 취급에 대한 관세의 10 배</li> <li>- 국제 배송의 경우 미화 9 달러 다만, 이러한 항목의 총 무게가 2,000 그램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li> </ul> <p>(b) 소포<sup>16</sup> 및 그 밖의 물품</p> <p>* 주소지 불명 물품의 취급</p>	<p>허용됨.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대우.</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C. 통신 서비스

이 양허표의 약속은 “기본통신서비스 약속에 관한 양허를 위한 주해” (S/GBT/W/2/Rev.1) 및 “주파수 가용성에 관한 시장접근 제한” (S/GBT/W/3)에 따라 작성됨. 이들 약속의 목적상, “비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란 전송 용량은 갖추지 않았지만 설비기반 공급자로부터 해저 케이블 용량을 포함한 그러한 용량 계약(장기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함. 비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는 사내 및 허용된 공공서비스공급지점(POP) 내에서 통신 장비를 소유하는 것이 달리 배제되지 않음.

기본 통신 서비스 (a) 음성 전화 서비스 (CPC 7521)	(1) 유선 기반 및 이동통신 서비스: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국제 통신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은 실체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1) 제한 없음.	베트남은 이 양허표에 첨부된 참조 문서의 의무를 약속함.  베트남이 회원국인 해저 케이블
--	--	------------	---

<sup>15</sup> 서신 송달에는 편지, 엽서, 수기문 또는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잡지와 같은 인쇄물, 또는 청구서 및 송장과 같은 상업적 문서가 포함된다.

<sup>16</sup> 도서, 카탈로그는 이 양허표에 포함된다.

<sup>17</sup>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은 수집 또는 배송을 위하여 현지 서비스 제공자와 제휴하여 수행될 수 있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패킷 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CPC 7523**)	위성 기반 서비스: 다음 대상에게 제공되는 위성 기반 서비스 외에는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베트남의 국제 위성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따름.		링크 컨소시엄의 경우,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에서 허가받은 케이블 육양국까지 연결된 완전한 소유의 해저 케이블 전송 용량[예, 해지할 수 없는 장기이용권(IRU) 또는 컨소시엄 소유권]을 통제하도록 허용되고, 베트남에서 허가받은 국제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와 국제 가상개인통신망(VPN) 및 인터넷교환서비스(IXP) 공급자에게 그러한 용량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c) 회선 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CPC 7523**)			
(d) 텔레스 서비스 (CPC 7523**)			
(e) 전신 서비스 (CPC 7523**)	-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역외 또는 해상 기반 사업 고객, 정부 기관,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공식 국제기구의 대표 사무소, 외교대표부 및 영사관, 첨단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f) 팩시밀리 서비스 (CPC 7521** + 7529**)	-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다국적 기업 <sup>20</sup>		
(g) 전용 회선 서비스 (CPC 7522** + 7523**)			
(o*) 그 밖의 서비스 - 화상회의 서비스 (CPC 75292) - 방송 <sup>18</sup> 을 제외한 비디오 전송 서비스 - 전파 기반 서비스는 다음을	(2) 제한 없음. (3) - 비 설비기반 서비스: 파트너 선택에 대한 제한 없이 합작투자가 허용될 것임.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6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sup>18</sup> 방송은 일반 대중에게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를 배급하는데 필요한 연속적 전송고리로 정의되나, 사업자 간 기여회선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포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전화 (지상 및 위성)</li> <li>• 이동 데이터 (지상 및 위성)</li> <li>• 호출</li> <li>• 개인휴대통신(PCS)</li> <li>• 주파수 공용</li> <li>• 인터넷 교환 서비스(IXP)<sup>19</sup></li> </ul>	<p>- <b>설비기반 서비스:</b>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협작투자가 허용될 것임. 외국인 출자는 협작투자 법정자본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 협작투자 지분의 51 퍼센트를 보유하면 경영권을 확보함.</p> <p>- <b>통신 분야에서</b> 사업협력계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는 현재 약정을 갱신하거나 현재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다른 형태의 설립체로 전환할 수 있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o*) 그 밖의 서비스	(1) <b>유선 기반 및 이동통신 서비스:</b>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국제 통신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은	(1) 제한 없음.	베트남은 이 양허표에 첨부된 참조 문서의 의무를 약속함.

<sup>19</sup> 인터넷 접속 서비스(IAS) 공급자에게 그들 간 연결 및 국제인터넷백본망으로의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sup>20</sup> 다국적기업은 다음 조건을 갖춘 회사를 의미한다. a)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가지고 있다. b) 최소 하나의 다른 당사자에서 운영된다. c) 최소 5년 동안 사업을 운영해 왔다. d) 당사자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그리고 e) 최소 하나의 당사자에서 위성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가상개인통신망(VPN) <sup>21</sup>	<p>실체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p> <p>위성 기반 서비스: 다음 대상에게 제공되는 위성 기반 서비스 외에는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베트남의 국제 위성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따름.</p> <p>-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역외/해상 기반 사업 고객, 정부 기관,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공식 국제기구 대표 사무소, 외교 대표부 및 영사관, 첨단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p> <p>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다국적기업<sup>22</sup></p>		<p>베트남이 회원국인 해저 케이블 링크 컨소시엄의 경우,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에서 허가받은 케이블 육양국까지 연결된 완전한 소유의 해저 케이블 전송 용량[예, 장기계약을 통한 회선 임대(IRU) 또는 컨소시엄 소유권]을 통제하도록 허용되고, 베트남에서 허가받은 국제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와 국제 가상개인통신망 및 인터넷 교환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러한 용량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p>

<sup>21</sup> VPN 생성 전에 정의된 폐쇄 이용자 그룹의 회원들 간에 비영리 목적으로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공유) 네트워크 위에 사설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로 상업적 조건으로 제공된다. 그러한 그룹은 기업그룹이나 조직, 또는 공통의 이익추구를 통하여 제휴관계가 형성된 법적 실체들의 그룹을 포함할 수 있다. VPN 서비스를 이용하는 폐쇄이용자 그룹의 초기 회원들은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한 다이얼 또는 경로 계획에 기재되어야 하며 권한 있는 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가상개인통신망 서비스 공급자는 실제로 상용서비스를 개시하기 최소 2주(영업일 기준) 전에 회원 변경을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하고 이 2주(영업일 기준) 동안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회원은 제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VPN 서비스를 재판매 할 수 없다. VPN은 제휴관계가 없는 제3자의 또는 제3자 간 트래픽을 수행 또는 이전할 수 없다. VPN 서비스는 허가 받은 외국인의 투자를 받은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인터넷접속서비스 및 (h)부터 (n)까지에 기재된 부가서비스와 함께 공급될 수 있다.

<sup>22</sup> 다국적기업은 다음 조건을 갖춘 회사를 의미한다. a)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가지고 있다. b) 최소 하나의 다른 당사자에서 운영된다. c) 최소 5년 동안 사업을 운영해 왔다. d) 당사자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그리고 e) 최소 하나의 당사자에서 위성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2) 제한 없음.</p> <p>(3) - <b>비 설비기반 서비스:</b> 파트너 선택에 대한 제한 없이 합작투자가 허용될 것임.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7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 <b>설비기반 서비스:</b>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투자가 허용될 것임.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부가서비스	(1) <b>유선 기반 및 이동통신 서비스:</b>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국제 통신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은 실체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1) 제한 없음.	베트남은 이 양허표에 첨부된 참조 문서의 의무를 약속함.
(h) 전자메일 (CPC 7523 **)			
(i) 음성메일 (CPC 7523 **)	위성 기반 서비스: 다음 대상에게 제공되는 위성 기반 서비스 외에는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베트남의 국제 위성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따름. -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역외 또는 해상 기반 사업 고객, 정부 기관,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공식 국제기구 대표 사무소, 외교 대표부 및 영사관, 첨단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CPC 7523**)			
(k) 전자적 데이터 교환(EDI) (CPC 7523**)			
(l)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 또는 부가가치 팩시밀리 서비스(CPC 7523**)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를 포함한다) (CPC 843**)	(2) 제한 없음. (3) <b>비 설비기반 서비스:</b> 사업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가 허용될 것임. 외국인 출자는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sup>23</sup> 다국적기업은 다음 조건을 갖춘 회사를 의미한다. a)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가지고 있다. b) 최소 하나의 다른 당사자에서 운영된다. c) 최소 5년 동안 사업을 운영해 왔다. d) 당사자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그리고 e) 최소 하나의 당사자에서 위성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합작투자 법정자본의 6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설비기반 서비스: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사업 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가 허용될 것임.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합작투자 지분의 51 퍼센트를 보유하면 경영권을 확보함. 통신 분야에서 사업 협력계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는 현재 약정을 갱신하거나 현재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다른 형태의 설립체로 전환할 수 있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u>부가 서비스</u> (o) 기타	(1) 유선 기반 및 이동통신 서비스: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국제 통신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은 실체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1) 제한 없음.	베트남은 이 양허표에 첨부된 참조 문서의 의무를 약속함.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인터넷 접속 서비스(IAS) <sup>24</sup>	<p>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p> <p>위성 기반 서비스: 다음 대상에게 제공되는 위성 기반 서비스 외에는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 받은 베트남의 국제 위성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역외 또는 해상 기반 사업 고객, 정부 기관,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공식 국제기구 대표 사무소, 외교 대표부 및 영사관, 첨단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li> <li>-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다국적기업<sup>25</sup></li> </ul> <p>(2) 제한 없음.</p> <p>(3) 비 설비기반 서비스: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통신 공급자와의 합작투자가 허용될 것임.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sup>24</sup> 최종 이용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sup>25</sup> 다국적기업은 다음 조건을 갖춘 회사를 의미한다. a)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가지고 있다. b) 최소 하나의 다른 당사자에서 운영된다. c) 최소 5년 동안 사업을 운영해 왔다. d) 당사자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그리고 e) 최소 하나의 당사자에서 위성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65 페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설비기반 서비스: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 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투자가 허용될 것임.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50 페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D. 시청각 서비스

영화 제작, 배급 및 상영 서비스의 경우 모든 영화의 내용은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검열되어야 함.

(a) 영화 제작 (CPC 96112, 비디오테이프는 제외한다)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베트남에서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사업 협력 계약 또는 합작투자 형태로만 가능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51 페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영화 배급 (CPC 96113, 비디오테이프는 제외한다)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베트남에서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사업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b) 영화 상영 서비스(CPC 96121)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베트남에서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사업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함. 외국인 출자는 법정자본의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베트남의 문화회관, 영화상영관, 공공영화클럽 및 협회와 이동 상영팀은 외국 서비스 공급자와의 사업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녹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3. 건설 서비스</b>			
A. 빌딩 관련 일반 건설업(CPC 51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B. 토목 관련 일반 건설업(CPC 513)	(3) 외국 기업은 다른 당사자의 법인이어야 함. 지점 설립이 허용됨.	(3) 지점의 장은 베트남 거주자여야 함.	
C. 설치 및 조립(CPC 514, 516)			
D.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CPC 517)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CPC 511, 515, 518)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4. 유통 서비스</b>			
<u>유통 서비스의 모든 하위분야에 적용 가능한 조치</u>			
A. 위탁 중개인 서비스 (CPC 621, 61111, 6113, 6121)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한 없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개인적 사용을 위한 상품 유통 - 개인적 및 상업적 사용을 위한 합법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통	(1)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열의 형태 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도매 서비스 (CPC 622, 61111, 6113, 6121)	(2)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C. 소매 서비스 (CPC 631 + 632, 61112, 6113, 6121) <sup>27</sup>	(3) 유통 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회사는 모든 합법적 수입품 및 국내 생산품에 관한 위탁중개업, 도매업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될 것임.  소매 서비스를 위한 아웃렛의 설립은(첫 번째 아웃렛은	(3) 제한 없음.	

<sup>26</sup> 이 양허표의 목적상, “의약품과 약”은 정제, 캡슐 또는 분말 형태의 비의약품 영양보조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sup>27</sup>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적절한 훈련과 인증을 받고 자신의 판매노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된 유통업자에 의한 추가판매로 이어지는 판매지원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 고정된 장소에서 벗어나서 활동하는 베트남 개별 위탁중개인에 의한 다단계 판매도 포함한다.

	<p>제외됨) 경제적 수요 심사(ENT)<sup>28</sup>를 기반으로 허용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D. 프랜차이징 서비스 (CPC 8929)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 지점 설립이 허용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지점의 장은 베트남 거주자여야 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sup>28</sup> 하나를 초과하는 아웃렛 설립 신청은 미리 수립되어 대중에게 공개된 절차를 따르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승인된다. 경제적 수요 심사의 주요 기준은 특정 지리적 구역 내의 기존 서비스 공급자의 수, 시장안정성 및 지리적 규모를 포함한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5. 교육 서비스</b>			
기술, 자연과학 및 기술, 경영관리와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국제법 및 언어교육 분야에 한정함.			
아래 (C), (D) 및 (E)의 경우, 교육 내용은 베트남 교육훈련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B. 중등 교육 서비스 (CPC 92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고등 교육 서비스 (CPC 92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D. 성인 교육 (CPC 924)	(3) 제한 없음.	(3) 외국인투자학교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교사는 최소 5년의 교직 경력을 보유하고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E. 그 밖의 교육 서비스 (CPC 929, 외국어 교육을 포함한다)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6. 환경 서비스</b>			
특정 지리적 구역에 대한 접근은 국가 안보에 관한 이유로 제한될 수 있음 <sup>29</sup> .			
A. 폐수 서비스(CPC 9401)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 8.1 조(정의)거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공공 독점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외국 회사는 베트남에서 BOT (건설-운영-이전) 및 BTO (건설-이전-운영)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됨.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p>(1) 관련 자문 서비스 외에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 8.1 조(정의)거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공공 독점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p> <p>공공복지 보장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은</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외국 회사는 베트남에서 BOT (건설-운영-이전) 및 BTO (건설-이전-운영)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됨.

<sup>29</sup>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GATS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정당화되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한이나 규제의 유지 또는 채택을 허용한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가정으로부터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것이 제한됨. 이들은 현지 시도 당국에 의하여 명시된 폐기물 수거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허용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p>(1) 제한 없음.</p> <p>(2) 약속 안함.</p> <p>(3) 약속 안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약속 안함.</p> <p>(3) 약속 안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CPC 9406)	<p>(1) 제한 없음.</p> <p>(2) 약속 안함.</p> <p>(3) 약속 안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약속 안함.</p> <p>(3) 약속 안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그 밖의 서비스  - 배기ガ스 정화 서비스(CPC 94040) - 소음 저감 서비스(CPC 94050)	(1) 관련 자문 서비스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 8.1 조(정의)거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공공 독점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관련 자문 서비스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환경 영향 평가 서비스 (CPC 94090*)	(1)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  (2)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  (3)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  (2)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  (3)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7. 금융 서비스</b>			
1. 제 8.12 조(전환)에 따라, 비합치 조치의 제안된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베트남은 제 8.6 조(최혜국 대우), 제 10.5 조(투자의 대우), 제 10.6 조(이행요건 금지) 및 제 10.7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하여 금융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하며, 제 8.4 조(내국민 대우), 제 10.3 조(내국민 대우) 및 제 8.5 조(시장접근)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다만, 이 양허표에 명시된 사항은 제외되며 양허표에 명시된 제한, 조건 및 자격을 조건으로 함.			
2. 제 8.5 조(시장접근)에 대한 베트남의 약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고 베트남 법에 따라 구성된 법인은 법적 형태에 관한 비차별적 제한을 조건으로 함.			
3.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베트남은 금융 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면허 또는 등록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함.			
4. 베트남은 건전성을 이유로 그러한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규 금융 서비스의 시장 진입에 관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베트남은 신규 금융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을 요구할 수 있음.			
5. 베트남은 이 양허표에 규정된 것과 다음을 제외하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제 8.1 조(정의)의 러호 1 목, 러호 2 목 및 러호 4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베트남은 다른 당사자의 금융 서비스 공급자가 제 8.1 조(정의) 러호 1 목에 정의된 국경 간 공급을 통하여 그리고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함: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제 1 조(정의) 나호 15 목에 언급된 금융 정보와 금융 자료 처리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제 1 조(정의) 나호 16 목에 언급된, 중개를 제외하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li> <li>b. 베트남은 자신의 거주자가 다른 모든 당사자의 영역에서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제 1 조(정의) 나호 5 목부터 16 목까지에 기재된 금융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함.</li> </ul>			
6. 베트남은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자연인의 주재 또는 출입국, 입국 또는 일시 체류를 포함하는 그 밖의 자연인의 이동에 의한 금융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7. 이 양허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베트남은 다음을 포함하거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국영 상업은행의 주식화 및 베트남에 있는 신용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li> <li>b. 베트남은 베트남사회정책은행, 베트남개발은행, 베트남협동조합은행, 베트남농업농촌개발은행 및 주택담보재금융은행을 포함하거나 이에 한정되지</li> </ul>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않는 하나 이상의 개발금융기관, 협동조합은행, 인민신용기금 및 미소금융기관에 이익 또는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음.	<p>c.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제 3 조(신금융서비스)에 따른 베트남의 의무를 제한함이 없이, 베트남은 신규 금융 서비스에 대하여 예비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예비 검사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공급자 수에 대한 상한선 또는 예비 검사 프로그램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도입할 수 있음.</p> <p>d. 베트남은 공공 목적의 활동에 대하여 정부 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과 같은 금융 지원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개발, 사회주택, 빈곤 감소, 공공 교육, 공공 훈련, 보건, 보육, 소수 민족 및 취약 계층과 취약 지역 인구를 위한 복지 및 고용 증진, 중소기업 개발, 주식화 절차를 증진하고 촉진하는 일회성 보조금 지급.</p> <p>e. 외국인 전략 투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베트남의 각 합자 상업은행에 대한 지분은 그 은행의 설립 자본의 2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건전한 은행 시스템을 위한 취약한 신용기관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이행하는 특수한 상황인 경우, 총리는, 개별 사안별로, 정해진 한도 비율을 초과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실시되는 취약한 신용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총 지분 보유량을 결정함.</p> <p>f. 외국 은행 지점에게는 다음이 허용되지 않음: (i) 자본 출자 또는 주식 매수, (ii) 그 외국 은행이 자신의 본국에서 수행하도록 허용되지 않은 활동의 이행, 그리고 (iii) 어떠한 형태로든 설립 면허에 기술된 장소 외의 지역에서의 거래점 개설. 베트남에 있는 외국 은행 지점의 건전성 비율은 베트남에 위치해야만 하는 규제 자본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p>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b>			
a. 직접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생명보험, 건강보험 서비스는 제외됨</li> <li>(b) 손해보험 서비스</li> </ul>	(1)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자본기업, 베트남 내 근무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보험 서비스</li> <li>- 재보험 서비스</li> <li>- 다음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을 포함한 국제 운송 관련 보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국제 해상운송 및 국제 상업 항공: 운송 중의 화물, 화물 운송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li> <li>▪ 국제 운송 화물</li> </ul> </li> <li>- 보험 중개 및 재보험 중개 서비스</li> <li>-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li> </ul>	(1) 제한 없음.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2)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c.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3)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d.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과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GATS 제 6 조, GATS 금융 서비스 부속서 제 2 항가호 및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와의 합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공포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짐.

일반 규칙으로서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 또는 상품의 권유는 관련 제도적 및 법적 형태 요건을 조건으로 함.

(a)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1) B(k) 및 B(l)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1) B(k) 및 B(l)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b) 소비자 대출, 주택담보 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응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2) 제한 없음.  (3) (a) 외국 신용기관은 다음 형태로만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 설립이 허용됨.  (i) 외국 상업은행의 경우: 대표사무소, 외국 상업은행의 지점, 외국인 출자가 설립 자본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상업 합작투자 은행, 합작투자 금융리스회사, 100 퍼센트 외국인 투자 금융리스회사, 합작투자 금융회사 및 100 퍼센트 외국인 투자 금융회사, 그리고 100 퍼센트 외국인 소유 은행	(2) 제한 없음.  (3) (a) 베트남에 외국 상업은행의 지점 설립을 위한 조건:  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모은행의 총 자산이 미화 200 억 달러를 초과함.	
(c) 금융 리스			
(d)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 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e) 보증 및 약정			
(f)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  -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양도성 예금 증서를 포함한다) - 외환 - 환율 및 이자율 상품(스왑, 선도 금리 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한다) - 금괴	(ii) 외국 금융회사의 경우: 대표사무소, 합작투자 금융회사, 100 퍼센트 외국인 투자 금융회사, 합작투자 금융리스회사 및 100 퍼센트 외국인 투자 금융리스회사		
(h) 자금 중개업	(iii) 외국 금융 리스회사의 경우: 대표사무소, 합작투자 금융리스회사 및 100 퍼센트 외국인 투자 금융리스회사		
(i)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운용, 연기금 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 서비스와 같은 자산 운용	(b) 지분 참여	(b) 합작투자은행 또는 100 퍼센트 외국인 소유 은행의 설립 조건: - 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모은행의 총 자산이 미화 100 억 달러를 초과함.	
(j)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 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i) 베트남은 지분화된 베트남 국영은행에 대한 외국 신용기관의 지분 참여를 베트남 은행의 지분 참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음.		
(k)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 정보와 금융 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ii) 주식매수 형태의 출자의 경우, 외국 기관 및 개인이 보유하는 각 베트남 합자 상업은행의 총 지분은 달리 베트남 법에 의하여 규정되거나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는 한, 은행 설립 자본의 3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l)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a)부터 (k)호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 서비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c) 외국 상업은행의 지점이 지점 사무소 외부에 다른 거래점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p> <p>(d) 외국신용기관은 내국민 대우 원칙을 기반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c) 100 퍼센트 외국인 투자 금융회사 또는 합작투자 금융회사, 100 퍼센트 외국인 투자 금융리스회사 또는 합작투자 금융리스회사의 설립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외국신용기관의 총 자산이 미화 100 억 달러를 초과함.</li> </ul>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C. 증권

(f)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 -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한 파생상품 - 양도성 증권 - 금괴를 제외한 그 밖의 유통 증권 및 금융자산	<p>(1) C(k) 및 C(l)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외국 증권 서비스 공급자는 대표사무소 및 외국인 출자가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투자 설립이 허용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g) 주간사로서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 참여(공모 또는 사모),	100 퍼센트 외국인 투자 자본에 의한 증권 서비스 공급자는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허용됨.		
(i)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운용, 연기금 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 서비스와 같은 자산 운용	C (i)부터 C (l)까지의 서비스에 대하여 외국 증권 서비스 공급자의 지점이 허용됨.		
(j)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증권 관련 상품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k) 증권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 정보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l) (f)를 제외하고,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증권 관련 서비스 [(l)의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은행 분야의 (l) 참고]			

#### 8. 보건 관련 및 사회 서비스

A. 병원 서비스 (CPC 931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B. 의료 및 치과 서비스 (CPC 9312)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100 페센트 외국인투자병원,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투자나	(3) 제한 없음.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사업 협력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p> <p>병원 서비스의 상업적 주재에 대한 최소 투자자본은 병원의 경우 미화 2,000 만 달러, 외래 진료소의 경우 200 만 달러, 그리고 전문의 진료소의 경우 20 만 달러임.</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집에 있는 환자를 위한 간호 서비스,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CPC 93191**)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출산 돌봄을 위한 간호 서비스,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CPC 93191**)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b>			
A. 다음을 포함하는 호텔 및 레스토랑  숙박 서비스(CPC 64110)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음식 케이터링 서비스(CPC 642)	(1)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	(1)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	
음료 케이터링 서비스(CPC 643)	<p>(2)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p> <p>(3)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p> <p>(3)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최혜국 대우.</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B. 여행알선대행서비스 (CPC 7471)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외국인 출자에 대한 제한 없이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투자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인투자기업의 관광안내원은 베트남 시민임. 외국 서비스 공급 기업은 인바운드 서비스 및 인바운드 서비스의 불가결한</p>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허용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일부로 입국 관광객을 위한 국내 여행 서비스만 할 수 있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연극, 라이브밴드 및 서비스 서비스를 포함한다) (CPC 9619)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외국인 출자가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가 허용된다는 것 외에는 약속 안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D. 기타  - 전자게임업 (CPC 964**)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허가를 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사업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49 퍼센트를</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초과하지 않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11. 운송 서비스

### A. 해상운송 서비스

(a) 연안운송을 제외한 여객 운송 (CPC 7211)	(1) 국제 화물 운송(제한 없음) 외에는 약속 안함.	(1) 국제 화물 운송(제한 없음) 외에는 약속 안함.	국제 해운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다음 항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b) 연안운송을 제외한 화물 운송 (CPC 7212)	<p>(2) 제한 없음.</p> <p>(3) 베트남 국적 선단 운영 목적의 등록 회사 설립: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외국인 출자가 총 법정자본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됨. 외국 선원은 베트남 합작투자가 소유한 베트남 국적 선박(또는 베트남에 등록된 선박)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나 선박 전체 피고용인의 3 분의 1 을 초과하면 안 됨. 선장 또는 최초 최고책임자는 베트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1. 도선 2. 예선지원 3. 식량, 연료 공급 및 급수 4.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 배정 또는 항만 관리인 서비스 6. 항행원조 7. 통신, 급수 및 전기 공급을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기반 운영 서비스 8. 비상 보수 시설 9.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서비스 10. 해운 대리업 서비스 접근 <sup>30</sup>

<sup>30</sup> 추가적 약속 열에 언급된 해운대리업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도로, 철도, 내륙수상, 해안 및 내륙 운송과 관련 부수 서비스가 이 양허표에 달리 완전하게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복합운송사업자는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화물의 지속적인 운송을 위하여 베트남 해운대리업 서비스 공급자를 통하여 트럭, 철도차량 또는 바지선 및 관련 장비를 임차하거나 빌릴 수 있어야 한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시민이어야 함.</p> <p>국제 해운 서비스 공급을 위한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sup>31</sup>:</p> <p>외국 운송회사는 외국인 소유가 51 퍼센트인 합작투자를 설립할 수 있음. 외국 운송회사는 100 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p> <p>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에 기재된 (1)에서 (7)까지의 활동만 수행하는 것이 허용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견적부터 송장 작성까지 고객과의 직접 연락을 통한 해운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li> <li>2. 화물 소유주를 대신한 업무 수행</li> <li>3. 요구되는 사업 정보의 제공</li> <li>4. 통관 문서 또는 운송되는 화물의 원산지와 성격에 관련된 그 밖의 문서를 포함한 운송 문서에 관한 서류 작성</li> <li>5. 통합운송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연안운송 서비스를</li> </ol>		

<sup>31</sup> “국제 해운 서비스 공급을 위한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란 외국운송회사가 자신이 운송하는 화물과 관련되고 고객에게 통합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현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서 국제해운은 실질적인 요소를 구성하며 그 외국운송회사에 의하여 제공된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포함한 베트남 국적 선박에 의한 해운 서비스 공급</p> <p>6. 필요한 때, 선박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한 업무수행</p> <p>7. 회사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과 관련하여 도로, 철도, 내륙 수로 운송 계약의 협상 및 서명</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해상 부수 서비스  -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 (CPC 7411) <sup>32</su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외국인 출자가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는 설립될 수 있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통관 서비스 <sup>33</sup>	(1)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sup>32</sup> 공공영역 점거의 경우, 공공사업의 허가 또는 면허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sup>33</sup> “통관 서비스” (또는 “관세사서서비스”)는 이 서비스가 서비스 공급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 활동의 일상적인 보조 활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수출 또는 화물의 통운송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을 말한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소유 제한 없이 합작투자를 설립할 수 있음.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sup>34</sup>	(1) 약속 안함*. 미래자유화. (2)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3)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미래자유화. (2)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3) 제한 없음. 미래자유화.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B. 내륙 수상 운송</b>			
(a) 여객 운송 (CPC 722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b) 화물 운송 (CPC 7222)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외국인 출자가 총 법정자본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베트남 파트너와 설립한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3) 제한 없음.	

<sup>34</sup>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는 컨테이너의 하역, 수선 및 선적준비작업을 위하여 항구나 내륙에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C. 항공 운송 서비스</b>			
(a) 항공 제품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항공사는 베트남에 있는 발권 사무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컴퓨터 예약 서비스	(1)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 통신당국의 관리하에 있는 공공 통신망을 사용해야 함.  (2) 형태 1에 기재된 사항과 같음.  (3) 형태 1에 기재된 사항과 같음.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항공기 정비 및 수리(CPC 8868**)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인 출자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가 허용됨. 100 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용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E. 철도 운송 서비스

(a) 여객 운송 (CPC 7111)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b) 화물 운송 (CPC 7112)	<p>(3) 다음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외국 공급자는 외국인 출자가 총 법정자본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베트남 파트너와 설립한 합작투자를 통하여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3) 약속 안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F. 도로 운송 서비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 여객 운송 (CPC 7121+712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b) 화물 운송 (CPC 7123)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사업협력계약 또는 외국인 출자가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를 통하여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시장의 필요성 <sup>35</sup> 을 조건으로 외국인 출자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가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될 수 있음.  합작투자의 운전인력은 100 퍼센트 베트남 시민임.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H. 모든 운송 형태의 부수 서비스

(a)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 공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외됨 (CPC 7411 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외국인 출자가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	--

<sup>35</sup> 고려되는 기준은 특히 다음과 같다: 신규 일자리 창출, 외환계정 흑자, 경영기법을 포함한 선진 기술의 도입, 산업 공해 감소, 베트남 종업원 직업교육 등.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않는 베트남 파트너와 설립한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b) 보관 및 창고 서비스(CPC 742)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c) 화물 운송 주선 서비스(CPC 748) <sup>36</su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sup>36</sup> 화물 운송 주선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인수, 문서 작성, 영업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송하인을 대신하여 선적물 운영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기타 (CPC 749 의 일부) <sup>37</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물 중개 서비스(제한 없음)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li> <li>(2) 제한 없음.</li> <li>(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 파트너와 설립한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li> <li>(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물 중개 서비스(제한 없음)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li> <li>(2) 제한 없음.</li> <li>(3) 제한 없음.</li> <li>(4)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베트남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li> </ul>	

<sup>37</sup> 다음 활동을 포함한다: 청구서 감사, 화물 중개 서비스, 화물 검사, 계근 및 샘플링 서비스, 화물 수취 및 인수 서비스, 운송서류 작성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는 화물주를 대리하여 제공된다.

## 참조 문서

### 양허표에 대한 주해

#### I. 적용범위

다음은 기본통신 서비스를 위한 규제적 틀에 대한 정의 및 원칙이다.

##### 정의

이용자란 서비스 소비자 및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a)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 (b)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기본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을 말한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이다.

- (a)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b)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 1. 경쟁보장장치

##### 1.1 통신에서의 반경쟁적 관행의 방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된다.

##### 1.2 보장장치

위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 (b)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 (c)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 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를 그 공급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것

#### 2. 상호접속

##### 2.1 이 절은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 하나의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에 적용된다.

##### 2.2 상호접속의 보장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될 것이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 (a)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품질로 제공된다.

- (b)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않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시의적절하게 제공된다. 그리고
- (c)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된다.

### 2.3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절차의 공개적 이용 가능성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는 공개될 것이다.

### 2.4 상호접속 약정의 투명성

지배적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접속협정이나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할 것이 보장된다.

### 2.5 상호접속: 분쟁 해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서비스 공급자는,

- (a) 언제라도, 또는
- (b)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인 기간 후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 및 요율이 전에 수립되지 않은 한도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제 5 항에 언급된 규제기관일 수 있는 독립적인 국내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것이다.

## 3. 보편적 서비스

모든 당사자는 자신이 유지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당사자에 의하여 정의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 4. 허가 기준의 공개적 이용 가능성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이다.

- (a) 모든 허가 기준 및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 (b) 개별 허가의 조건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거부 사유는 신청자에게 통지될 것이다.

### 5. 독립적인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어떠한 기본통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도 분리되어 있고 어떠한 기본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않는다. 규제기관의 결정과 규제기관이 이용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 관하여 공평하다.

## 6.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모든 절차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은 공개될 것이나, 특정한 정부의 사용을 위하여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요구되지 않는다.

**부록**  
**베트남의 최혜국 대우 분야별 면제 목록**

분야 또는 하위분야	제 8.6 조(최혜국 대우)와의 비합치성을 보여주는 (분야에 적용될) 조치에 대한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	의도되는 존속기간	최혜국 대우 면제 필요성을 창출하는 조건
모든 분야 상업적 주제	양자투자협약에 따라 특혜대우를 제공하는 조치	베트남과의 양자투자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	무기한	베트남에서의 투자 촉진
시청각 서비스 -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상물의 제작, 배급 및 상영	시청각 작품 공동제작협정의 적용 대상인 시청각 작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그러한 협정을 기반으로 하는 조치	현재 또는 미래에 그러한 양자 또는 다자 간 협약이 발효되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무기한	이러한 협정의 목표는 관련 국가들 간의 문화적 연계성을 증진하는 것임.
시청각 서비스 -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상물의 제작 및 배급	시청각 작품 및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그러한 작품의 공급자에게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	문화협력분야에서 양자 및 다자 간 협약에 서명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무기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베트남이 장기적인 문화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임.
시청각 서비스 - 대중에 대한 방송 전송을 통한 시청각 작품의 제작 및 배급	방송 전송 접근에 관한 특정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시청각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제공하는 조치	문화협력분야에서 양자 또는 다자 간 협약을 체결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무기한	이러한 조치는 그 분야에서 베트남 내부 및 지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해운	외국 운송회사가 완전히 소유하는 자회사의 통상적인 영업 활동에 해당되는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조치	해운협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5년	양자 협약
해상운송 서비스: - 내륙 육로 트럭 화물 운송 - 화물 보관과 창고, 그리고 - 컨테이너 압적장	3 가지 하위분야는 베트남과 싱가포르 간의 해운협약에 따른 특혜 대우의 대상이 됨.	싱가포르 공화국	10년	양자 협약

